

#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(서준오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175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: 2025년 10월 20일  
발의자: 서준오 의원(1명)  
찬성자: 고광민, 김성준, 김영철,  
김원태, 민병주, 박승진,  
서상열, 송도호, 유정희,  
이영실, 이용균, 홍국표  
의원(12명)

### 1. 제안이유

- 서울시 자치구로 이원화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권한을 자치구로 일괄 위임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변경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포함함으로써,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조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

### 2. 주요내용

-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기반시설의 규모를 10페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신설함(안 제11조제1항)
- 모든 경미한 변경 사항을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1조제2항)

#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1. 기반시설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기반시설의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
②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) ①</p> <p>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"시·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p> <p>1. ~ 10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11조(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) ①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
<p>②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p> <p>1. 영 제13조제4항제1호의 경우 중 정비구역 면적 5퍼센트 미만의 변경</p> <p>2. 영 제13조제4항제2호의 경우 중 정비기반시설 규모 5퍼센트 미만의 변경</p> <p>3. 영 제13조제4항제3호부터 제6호</p>	<p><u>11. 기반시설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기반시설의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</u></p> <p><u>②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다.</u></p>

까지, 제10호 및 제11호의 경우

4. 영 제13조제4항제7호의 경우 중

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 
축소하거나 5퍼센트 미만의 범위  
에서 확대하는 변경

5. 영 제13조제4항제8호의 경우 중

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낮게 변경  
하는 경우

6.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

당하는 경우

##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비대상 사유서

##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11조(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)제1항제11호를 신설하여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기반시설의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내용을 수정하여 모든 경미한 변경 사항을 구청장이 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조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, 별도의 비용을 수반 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##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현

추계분석관 김진형

☎ 02-2180-7954

e-mail : [kjh0816@seoul.go.kr](mailto:kjh0816@seoul.go.kr)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